##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138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정청래·추미애·이병진

박성준 · 강준현 · 김재원

김현정 · 모경종 · 신영대

황명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 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에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법률 제 호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요건) ①		
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			
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			
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u>.</u>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u>관한 특례법」 및 「아동 ·</u>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에 규정된 범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